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209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 일
중소기업청장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추경사업 실시에 따라 관련 지원분야에 대한 집행방법을 확정하고, 정책방향에 따른 우대지원 추가 등 내용 개정
 -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집중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할 목적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운영요령 마련
- 본사업과 추경사업 구분을 위한 명칭변경 및 단일사업에 의해 일부 사업비 관리방안 변경
- 동 요령의 해석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관련 용어정비

2.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 * 동법 시행령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3. 주요내용

- ① 출연금관리방안 변경(제4조)

- 1년 사업집행임에 따라 사업에 재투자하던 출연금을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도록 변동

② 용어정비 및 관리기관 변경(안 제7조, 제18조)

-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변경, 관리기관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추가

□ 선정위원회 대신 전문가위원회 개최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1조)

- 선정위원회 대신 인증분야별 전문가 풀에서 선별하여 분야별 지원여부, 지원 금액을 심사하는 전문가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함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공고방법 : 홈페이지(<http://www.smba.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팩스 : 042-472-3293
- 문의 :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042-481-4575, 451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전문 1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출연금 관리 등) ③ 관리기관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4조(출연금 관리 등)</p> <p>③ <u>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④ <u>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한다. 단,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에 이후 사후관리 및 정부출연금을 집행이 필요로 할 시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시 요구되는 정부출연금 반납은 유예할 수 있다.</u></p>
<p>제6조(주관기업) ①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p> <p>② 주관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략)</p>	<p>제6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 <u>추가지원사업</u>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p> <p>② <u>참여기업</u>은 인증획득 <u>추가지원사업</u>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략)</p>

현 행	개 정 안
<p>제 1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관리기관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업체의 선정 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 영한다.</p> <p>② 관리기관장은 선정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이내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p> <p>③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 한다.</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건강관 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의 경우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 회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p>	<p>제 11조(선정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① 관리기관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 지 원대상업체의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한다.</p> <p>② 관리기관장은 선정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이내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p> <p>③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 한다.</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건강관 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의 경우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 회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p> <p>⑥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에서는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대신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 한다.</p>
<p>제 13조(협약의 체결) 주관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p>	<p>제 13조(협약의 체결) 참여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p>

현 행	개 정 안
<p>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 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u>주관기업</u>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 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u>참여기업</u>의 선 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 14조(협약의 변경) ① <u>주관기업</u>이 불가피 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 14조(협약의 변경) ① <u>참여기업</u>이 불가피 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또 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16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u>주관기업</u>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 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인 증에 대해서는 <u>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 행할 수 있다.</u></p> <p>② <u>주관기업</u>이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 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 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 16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u>참 여기업</u>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획득 <u>추가지원사업</u>의 과제를 완료하 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u>최장 2년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u></p> <p>② <u>참여기업</u>이 인증획득 <u>추가지원사업</u>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해 인증획득 <u>추 가지원사업</u>에 지원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18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 규정 에 의한 관리기관은 <u>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u>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관 리업무의 태만, 출연금의 부당한 집행 등 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p>	<p>제 18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 규정 에 의한 관리기관은 <u>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u>으 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관리업무 의 태만, 출연금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p>

현행	개정안
<p>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과제 수행의 관리 등) ① (생략)</p> <p>② 컨설팅기관 및 주관기업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2조(과제 수행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컨설팅기관 및 참여기업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2조(종전 협약과제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2조(종전 협약과제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8, 2009.12.24)은 폐지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은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 2013.3.6)은 폐지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은 협약당시의 규정에 따른다.</p>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 4호 (2001. 3. 16)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13호 (2001. 7. 30)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17호 (2001. 10. 11)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2- 8호 (2002. 6. 7)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2-13호 (2002. 10. 14)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3-18호 (2003. 12. 18)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6-31호 (2006. 12. 28)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8-58호 (2008. 12. 24)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9-58호 (2009. 12. 24)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13- 4호 (2013. 3. 6)
-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13- 호 (2013. 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이하 “해외규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용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를 합친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인증획득지역, 인증획득비용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 등

제3조(관리기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2.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4.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5.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매달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해 이후 사후관리 및 정부출연금을 집행이 필요로 할 시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시 요구되는 정부출

연금 반납은 유예할 수 있다.

- 제5조(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①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②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이내에 4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하며,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동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참여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의 체결
2.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제3장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지원 신청, 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제7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소기업, 부품·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과제의 신청)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과제의 참여기업이 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서의 검토)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업체의 평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의 효율성, 기술 및 품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① 관리기관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선정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내외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장은 위원의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의 경우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에서는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대신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12조(지원대상업체의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준점수이상의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지원대상업체 평가의 적정성
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3.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
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기타규격”으로 신청된 규격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해외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과제의 협약체결,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참여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 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과제 목표에 반하지 않고, 해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협약변경 승인내용을 해당 분기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해외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협약 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월말 기준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중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이 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 2항에 의한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해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